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31호 2017. 8. 1.(화)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제2017-1289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2017-1332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17

제2017-1334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

제2017-1336호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제2017-1344호 임대조건 공고..... 48

【고 시】

제2017-132호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9

제2017-13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73

제2017-13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75

제2017-13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7

제2017-137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79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2. 주요개정 내용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안제2조 및 제3조)
 - (현행) 재무관(시민국장) →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을 위원으로 변경(안제2조 및 제3조)
 - (현행) 재무관(시민국장) → (개정)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안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61 FAX 041-840-2317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공주시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무 및 임기)”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영 제107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4명이상 6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 ④ 영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자문 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을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5조에 따라서 심의등 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

의 또는 자문회의”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한”을 “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를 “위원회에서”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영 제60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제8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를 “(심의회 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8조제3항”을 각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13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심사수당”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p>

② 위원장은 공주시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
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
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
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 설>

<신 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시장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
무원 위원인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인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
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

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영 제107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4명이상 6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참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
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
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④ 영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의·자문 요청) 계약담
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
문 (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삭 제>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

<삭 제>

제6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 제5조에 따라서 심의등 요청서-----

-----.

② -----

----- 위원회

-----.

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 -----
-----.

제9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영 제60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제7조(협조요청 등)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

-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결과 반영) ① 제6조제3항-----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② 제6조제3항-----

-----.

<삭 제>

<삭 제>

-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4. 보안등공사
- 5. 보도블록 설치공사
-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7. 마을회관공사
- 8. 공중화장실공사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시 공
무원-----

-----.

② 제7조의 -----

-----.

③ ----- 등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주요 조례 제정내용

-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 제6조(위탁 운영)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기관을 선정
-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 ~ 2017. 8. 2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8. 21.(월) 까지 공주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59 FAX : 041-840-2310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로 2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의료·교육·직업·사회)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7-1334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시 우리시 특산물품 등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 민선6기 공양사항인 “다문화 및 여성가족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행에 따른 명칭·용어 등 일부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위원 추가 및 특정성별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 “다문화 및 여성가족 통합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명칭·용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기타 용어 등 현행화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 ~ 8. 21.(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복지지원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8163 FAX: 840-231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5.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 사업
7.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8.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0.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
11. 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 시 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회의**”로, “**시장이 위촉하
며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 보건소 담당과장, 공주교육
지원청 관련과장으로**”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한 의원**”을 “**추천
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과장

3. 복지지원과장

4. 건강과장

제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

제7조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보임위원**”을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을 “**경우
에는 위촉을 해제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8조제3호 중 “질병 등 그 밖의”를 “그 밖에 질병 등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원업무 담당주사”를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공주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주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5조
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
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u> 2. <u>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사업</u> 3. <u>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사업</u> 4. <u>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지원사업</u> 5. <u>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 사업</u> 6. <u>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사업</u> 7. <u>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사업</u> 8. <u>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교육지원 사업</u> 9. <u>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u> 10. <u>빈곤·위기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u> 	<p>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u> 2. <u>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지원 사업</u> 3. <u>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법률상담 등) 제공 사업</u> 4. <u>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자활지원</u> 5. <u>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지원</u> 6. <u>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건강증진사업</u> 7. <u>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u> 8. <u>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u> 9. <u>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u> 10. <u>다문화가족의 국제특송요금(모국) 지원 사업</u> 11. <u>우리시 특산물품 지원 사업</u>

12. 결혼이민자 가족의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 보건소 담당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과장으로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또는 단체 관계자

3. 결혼이민 당사자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신설>

<신설>

1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
-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1. ----- 추천하는 시의원 --

2. 사회과장

3. 복지지원과장

4. 건강과장

5. 공주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부서의 장

6. 공주경찰서 다문화가족 관련업무부서의 장

7. 공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람

④ -----
----- 공무원 -----
-----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
-----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
----- .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

제11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원 업무팀장으 ----- .

제13조(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

----- 공주시

법인이나 단체에 공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생략)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위한 제 5조의 사업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고 제2017-1336호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민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친절·신속·정확한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평가 우수기관 목표” 달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11개 조례(제1장~ 제3장)

개정 구분	조례명	개정안 세부 내용
제1장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중 “통장사본” 제출 내용을 삭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감면으로 명확하게 개정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중 “통장사본” 제출 내용을 삭제 -별지 서식 추가제출 서류란의 통장사본 삭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제출 내용을 삭제
제2장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보육의 우선 제공)에서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12.29.)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추가 -제32조제5항을 삭제 -제40조제1항제4호 개정 -제40조제2항 신설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개정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관리자를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
제3장 장애인 차별적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장애인” 를 “장애나” 로 개정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따른 시설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신체장애자용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7. 8. 1. ~ 8.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주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2036 FAX: 840-230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제1조(「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장사본**”을 삭제 한다.

제2조(「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8호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제3조(「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청서와 본인의 통장 사본을**”을 “**신청서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추가제출 서류란의 “**통장 사본**”을 삭제한다.

제4조(「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구분란 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
2. 건축물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제2장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제5조(「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6조(「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계등록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 한다 .

제3장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제9조(「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자”를 “장애나”로 한다.

제10조(「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를 “누구나”로, “있는공주시”를 “있는 공주시”로 한다.

제11조(「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으로,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를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별표 5 제8호 구분란 <u>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u></p>	<p>별표 5 제8호 구분란 <u>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u></p>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신청 방법)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본인의 통장 사본을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p>	<p>제6조(신청 방법) ① ----- ----- 신청서를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2호서식 구분란 <u>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u></p>	<p>별지 제2호서식 구분란 <u>1. 자동차 구입계약서(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예금증서 (5천만원 이상)</u></p>

<p>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1통</p> <p>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p> <p>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p>	<p>2. 건축물 임대계약서(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p> <p>3·4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우선입소)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p>	<p>제12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p> <p>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p> <p>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④ (생략)</p> <p>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p>

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3. (생 략)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써 2003년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

는 경우) ① -----

-----.

2.·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접한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위 호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준수사항) <u>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1.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u></p> <p>2. <u>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u></p> <p>3. <u>관리인을 두어 상시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4. <u>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제17조(준수사항) <u>제16조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한다.</u></p>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p>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p>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자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장애나 -----

 -----.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u>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u>자전거주차장 장치를 설치하고 자</u></p>	<p>제2조(정의) ----- -----.</p> <p>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이란 ----- -----</p>

<p>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p> <p>3. (생략)</p> <p>4. "시민자전거"란 <u>자전거를 이용하여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u>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공공자전거를 말한다.</p>	<p>----- -----.</p> <p>3. (현행과 같음)</p> <p>4. ----- <u>누구나</u> ----- ----- ----- <u>있는 공주시</u> ----- ----- -----.</p>
--	--

**공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u>신체장애자</u>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u>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u>을 말한다.</p> <p>4. ~ 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u>----<u>사용되는 도로</u>를 말한다</p> <p>4. ~ 9. (현행과 같음)</p>

임대조건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17-13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에 따른 임대조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1.

공 주 시 장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 시작일	임대 종료일	세대수	전용면적 (㎡)
공주시 웅진절골3길 38, 107동 1104호(웅진동, 금성백조예미지)	130,000,000	-	17.5.2.	19.5.1.	1	59.915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8. 1.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주도시지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43건

가) 교통시설 - 26건

(1) 도로 - 26건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0~33	주간선 도로	2,726	대로2-2	월송동지구계	일반 도로	신관대로~ 월송국도 32호선	'85.12.28	
변경	대로	2	3	30~33	주간선 도로	2,813	대로2-2	월송동지구계	일반 도로	신관대로~ 월송국도 32호선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1,490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공주대북측	'85.12.28	
변경	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1,473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공주대북측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28	주간선도로	1,406	대로3-3	2호 공공공지	일반도로		'85.12.28	
변경	대로	3	6	25~28	주간선도로	1,406	대로3-3	중로2-월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8	25~25.5	주간선도로	988	7호광장	월송동지구계	일반도로	월송동	'85.12.28	
변경	대로	3	8	25~28.5	주간선도로	991	7호광장	월송동지구계	일반도로	월송동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2,757	대로3-1	중로2-9	일반도로	검상농공단지	'97. 4.19	
변경	중로	1	9	20	집산도로	2,654	대로3-1	중로3-35	일반도로	검상농공단지		
기정	중로	1	10	20	주간선도로	1,128	대로2-5중점	소학동 지구계	일반도로	소학동	'97. 4.19	
변경	소로	2	170	8	집산도로	1,130	중로1-21	소학동 지구계	일반도로	소학동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930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금성동	'77. 2.17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926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금성동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선도로	4,850	대로3-14	검상동지구계	일반도로	백제큰길	'97. 4.19	
변경	중로	3	35	12~25	보조간선도로	5,672	대로3-14	검상동지구계	일반도로	백제큰길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901	중로2-1	대로3-10	일반도로	제민천	'77. 2.17	
변경	중로	3	9	12	집산도로	922	중로2-1	중로2-20	일반도로	제민천		
기정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024	18호광장	쌍신지구계	일반도로	쌍신동	'97.4.19	
변경	중로	3	13	12	집산도로	1,018	18호광장	쌍신지구계	일반도로	쌍신동		
기정	중로	3	22	12	보조간선도로	406	18호광장	쌍신지구계	일반도로	쌍신동	'02. 3.11	
변경	소로	3	171	7.5~8	보조간선도로	410	18호광장	쌍신동 산6-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210	대로2-5	대로2-5	일반도로	소학동	'85.12.28	
변경	소로	2	33	8	국지도로	320	중로1-21	중로1-21	일반도로	소학동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256	대로3-1	대로3-10	일반 도로		'87. 9.15	
변경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230	소로2-108	중로2-20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171	8	특수 도로	19	대로3-1	소로2-10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2	134	8	국지 도로	451	6호광장	중로3-1	일반 도로	금강APT	'77. 2.17	
변경	소로	2	134	8	국지 도로	452	6호광장	중로3-1	일반 도로	금강APT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78	중로1-3	중동47-3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39	5~6	국지 도로	82	중로1-3	중동47-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48	소로3-41 중동310-2	소로3-44 중동307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50	소로3-41	소로3-4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355	중로2-4	중로3-2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44	6	국지 도로	356	중로2-4	중로3-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444	중로1-1	소로3-44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45	6	국지 도로	291	중로1-1	영명중고교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115	소로2-32	금학동 231-5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88	4~6	국지 도로	118	소로2-32	금학동 23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5	6	국지 도로	200	대로1-1	옥룡배수지	일반 도로		'85.12.28	
변경	소로	3	105	4~6	국지 도로	243	대로1-1	옥룡배수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3	6	국지 도로	32	대로3-10	소로2-108	일반 도로	금성동	'87. 9.15	
변경	소로	3	113	4	특수 도로	32	중로2-20	소로2-108	보행자 전용도로	금성동		
기정	소로	3	121	6~8	국지 도로	470	중로1-7	대로3-4	일반 도로	신관동	'85.12.28	
변경	소로	3	121	6~8	국지 도로	470	중로1-7	대로3-4	일반 도로	신관동		
기정	소로	3	128	6	국지 도로	68	대로2-6	옥룡동110 답	일반 도로		'97. 4.19	
변경	소로	3	128	6	국지 도로	82	대로2-6	옥룡동 산2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39	4	국지 도로	1,327	중로2-1	12호광장	일반 도로		'77. 2.17	
변경	소로	3	139	4	국지 도로	1,409	중로2-1	12호광장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2	4	국지 도로	152	중로2-1	중로3-5	일반 도로		'97. 4.19	
변경	소로	3	152	4	국지 도로	150	중로2-1	중로3-5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70	4	국지 도로	91	중로2-4	소로3-39	일반 도로		'11. 8. 1	
변경	소로	3	170	4	국지 도로	90	중로2-4	소로3-39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3	대로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2,726m→2,813m 증) 87m ○선형 변경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기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3-5	대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1,490m→1,473m 감) 17m ○선형 변경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기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3-6	대로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점 정정 -종점:2호공공공지 →중로2-월1 ○선형 변경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6호('15.10.6)의 고시내용 중 오류사항 정정(종점 정정) ○기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선형 변경
대로3-8	대로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988m→991m 증) 3m ○선형 변경 -폭원:25~25.5m→25~28.5m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중로1-9	중로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2,757m→2,664m 감) 93m ○선형 및 종점 변경 -연장:2,664m→2,654m 감) 10m -종점:중로2-9→중로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기개설된 도로 현황 고려 및 중로 2-9호선 변경에 따른 선형 및 종점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1-10	소로2-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도로명:중로1-10→소로2-170 -폭원:20m→8m -기능:주간선도로→집산도로 -연장:1,128m→1,130m -기점:대로2-5중점→중로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이용현황 및 향후 확장가능성이 미미함에 따라 기능 및 선형 변경, 대로2-5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중로2-1	중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연장:930m→923m 감)7m ○ 선형 변경 -연장:923m→926m 증)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중점부 기개설 현황 및 노선변경 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중로2-9	중로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연장:4,850m→5,202m 증)352m ○ 노선 연장 및 선형 변경 -도로명:중로2-9→중로3-35 -폭원:15m→12~25m -연장:5,202m→5,672m 증)47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대로3-14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중로3-9	중로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연장:901m→922m 증) 21m ○ 중점 변경 -중점:대로3-10→중로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대로3-10호선 변경에 따른 중점 변경
중로3-13	중로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연장 : 1,024m→1,023m 감)1m ○ 선형 변경 -연장 : 1,023m→1,018m 감)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쌍신동 일원의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해소 및 사유재산보호를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
중로3-22	소로3-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도로명 :중로3-22→소로3-171 -폭원:12m→7.5~8m -연장 : 406m → 410m 증)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미산 우회도로로 향후 도로확장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기개설된 도로 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2-33	소로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연장:210m→248m 증)38m ○ 노선 연장 -연장:248m→320m 증)72m -기·중점:대로2-5→중로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대로2-5호선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및 기·중점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100	소로2-100	○노선 분리 및 종점 변경 -연장:256m→230m 감)26m -종점:대로3-10→중로2-20	○기점부 도로이용현황(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한 노선 분리 및 대로3-10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소로2-100	소로2-171	○노선 분리 -도로명 :소로2-100→소로2-171 -연장:19m -사용형태:보행자전용도로	○기점부 도로이용현황(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한 노선 분리
소로2-134	소로2-134	○연장 정정 -연장:451m→446m 감) 5m ○선형 변경 -연장:446m→452m 증) 6m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6호 광장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3-39	소로3-39	○연장 정정 -연장:78m→82m 증)4m ○선형 변경 -폭원:6m→5~6m -연장 변경없음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 및 지적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42	소로3-42	○선형 변경 -연장:148m→150m 증)2m	○도로이용현황 및 지적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44	소로3-44	○연장 정정 -연장:355m→361m 증)6m ○선형 변경 -연장:361m→356m 감)5m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 지적현황 등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45	소로3-45	○연장 정정 -연장:444m→427m 감)17m ○노선 축소 및 종점변경 -연장:427m→291m 감)136m -종점:소로3-44→영명중학교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 개설여건 및 학교부지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선 축소 및 종점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88	소로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115m→117m 증)2m ○선형 변경 -폭원:6m→4~6m -연장:117m→118m 증)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105	소로3-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변경 -폭원:6m→4~6m -연장:200m→243m 증)43m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113	소로3-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기능, 사용형태 정정 및 기점 변경 -폭원:6m→4m -기능:국지도로→특수도로 -사용형태 :일반도로→보행자전용도로 -기점:대로3-10→중로2-20 	○기결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한 폭원, 기능, 사용형태 정정 및 대로3-10 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3-121	소로3-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 경미한 선형 조정 -폭원 변경없음(조서) -연장 변경없음(조서) 	○도로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128	소로3-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68m→86m 증)18m ○노선 축소 및 종점 변경 -연장:86m→82m 감) 4m -종점:옥룡동110답 →옥룡동 산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도로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노선 축소 및 종점 변경
소로3-139	소로3-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1,327m→1,410m 증)83m ○노선 축소 -연장:1,410m→1,409m 감)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중로2-1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부 노선 축소
소로3-152	소로3-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정정 -연장:152m→150m 감)2m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소로3-170	소로3-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축소 -연장:91m→90m 감)1m 	○소로3-39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나) 공간시설 - 11건

(1) 광장 - 1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5	광장	교통광장	금성동 115-1 일원	22,140	증)163	22,303	'02. 3.11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5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2,140m² → 22,149m² (증) 9m² ○ 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2,149m² → 22,303m² (증) 15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대로3-10호선 변경 및 현황을 고려한 변경

(2) 녹지 - 8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2	녹지	완충 녹지	금홍동 622일원	2,795.2	-	2,795.2	'05.11.30	
변경	24	녹지	경관 녹지	금학동 399일원	5,207.9	-	5,207.9	'06. 2.17	
변경	25	녹지	완충 녹지	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10. 1.18	
변경	28	녹지	경관 녹지	금홍동 산37-8임 일원	3,517	-	3,517	'14.12. 2	
변경	29	녹지	연결 녹지	월송동 552-2답 일원	2,805	-	2,805	'14.12. 2	
변경	30	녹지	연결 녹지	월송동 513-2임 일원	2,284	-	2,284	'14.12. 2	
변경	31	녹지	연결 녹지	금홍동 264-2답 일원	3,082	-	3,082	'14.12. 2	
변경	32	녹지	경관 녹지	금홍동 270-16대 일원	93	-	93	'15.10. 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2	녹지	○선형 변경 - 면적 변경없음	○기 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선형 변경
24	녹지	○선형 변경 - 면적 변경없음	○기 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선형 변경
25	녹지	○위치 정정 - 위치 : 김상동, 봉정동563-3번지 일원 →봉정동 563-3번지 일원	○위치오류에 따른 정정
28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경1→28	○국토부 고시 제2014-735호('14.12.2)에 따라 결정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차원의 도면표시번호 변경 (경1→28)
29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연1→29	○국토부 고시 제2014-735호('14.12.2)에 따라 결정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차원의 도면표시번호 변경 (연1→29)
30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연2→30	○국토부 고시 제2014-735호('14.12.2)에 따라 결정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차원의 도면표시번호 변경 (연2→30)
31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연11→31	○국토부 고시 제2014-735호('14.12.2)에 따라 결정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차원의 도면표시번호 변경 (연11→31)
32	녹지	○도면표시번호 변경 - 경2→32	○국토부 고시 제2015-726호('15.10.6)에 따라 결정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관리차원의 도면표시번호 변경 (경2→32)

(3) 공원 - 2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월송동 513-5임 일원	14,920	-	14,920	'14.12. 2	자연녹지 지역
변경	25	산성 문화 공원	문화 공원	산성동 181-149 번지 일원	3,680	-	3,680	'10. 4. 1	일반상업 지역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9	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 2 →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35호 ('14.12.2)에 따라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 기존 도면표시번호와 중복 결정됨에 따라 도면표시번호 변경 (2→9)
25	산성 문화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 ① → 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일환으로 도면 표시번호 변경 (①→25)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2건

(1) 수도공급설비 - 2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배 수 지	옥룡동 22-18번지 일원	27,300	증)2,018	29,318	'85.12.28	
변경	4	정수시설	월송동 산42-7 일원	64,150	감)1,540	62,610	'06.11.30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배 수 지	○위치 및 면적 정정 - 위치:옥룡동 산8-1 →옥룡동 22-18번지 일원 - 면적:27,300m ² →28,835m ² 증) 1,535m ² ○면적 증가 - 면적:28,835m ² →29,318m ² 증) 483m ²	○위치 정정 및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토지소유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면적 변경
4	정수시설	○면적 정정 - 면적:64,150m ² →62,675m ² 감) 1,475m ² ○시설선형 변경 -면적:62,675m ² →62,610m ² 감) 65m ²	○기 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에 따른 정정 및 대로2-1호선 중복구간 제척에 따른 시설 변경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4건

(1) 공공청사 - 1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7	농민 교육원	공공 청사	금홍동 산92-2임 일원	38,574	감)38,574	-	'97.4.19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7	농민교육원	○ 공공청사 폐지 - 위치: 금홍동 산92-2임 일원 - 면적: 38,574m ²	○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업무수행으로 인해 미조성된 공공청사(농민교육원) 폐지

(2) 학교 - 2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	교대부속 초교	초등 학교	금학동 231-1 일원	17,820	감)237	17,583	'83. 9. 5	
변경	10	영명중교	중학교	중동 308 일원	15,935	증)2,624	18,559	'83. 9.24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	교대부속 초교	○ 면적 정정 - 면적: 17,820m ² → 17,434m ² 감) 386m ² ○ 면적 증가 - 면적: 17,434m ² → 17,583m ² 증) 149m ²	○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소로3-88호선 변경에 따른 변경
10	영명중교	○ 면적 정정 - 면적: 15,935m ² → 16,317.1m ² 증) 382.1m ² ○ 면적 증가 - 면적: 16,317.1m ² → 18,559m ² 증) 2,241.9m ²	○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소로3-42호선, 7호 공원 변경, 토지소유 및 학교시설이용현황을 고려한 변경

(3) 문화시설 - 1건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충남역사 박물관	문화 시설	중동 284-1번지 일원	11,961	증)789	12,750	'85.12.28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충남역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및 면적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중동284-1 →중동284-1번지 일원 - 면적:11,961m²→13,172m² 증)1,211m² ○ 시설명 변경 및 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공주박물관 →충남역사박물관 - 면적:13,172m²→12,750m² 감)42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정정 및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현황, 소유관계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시설명 변경 및 면적 변경

나. 유구도시지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1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창말B	유구리 426 일원	40,773	증)535	41,308	'07. 6. 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창말B	○면적 증가 -면적:40,773m ² →41,308m ² 증) 535m ²	○중로3-3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622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89. 6. 8	
변경	소로	1	6	10	집산 도로	618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200	소로3-14	소로3-17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00	중로3-3	유구리 423-1대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02	소로1-6	유구리 423-1대	보행 및 소방도로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81	중로3-3	소로3-16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86	소로1-6	소로3-16	보행 및 소방도로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230	중로3-3	소로3-17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33	6~8	국지 도로	238	소로1-6	소로3-17	보행 및 소방도로			

주)기반시설의 변경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에 반영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	소로1-6	○선형 변경 - 도로명:중로3-3→소로1-6 - 폭원:12m→10m - 연장:622m→618m 감)4m	○기개설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소로3-16	소로3-16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 연장:200m→202m 증)2m - 기점:중로3-3→소로1-6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17	소로3-17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 연장:181m→186m 증)5m - 기점:중로3-3→소로1-6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33	소로3-33	○폭원 및 연장 정정 - 폭원:6m→6~8m - 연장:230m→232m 증)2m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 연장:232m→238m 증)6m - 기점:중로3-3→소로1-6	○폭원 및 연장 오류에 따른 정정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2	1BL	1,440	1,554	1-1	유구읍 유구리 594-2번지 일원	1,440	1,554	
	2BL	2,326	2,326	2-1	유구읍 유구리 413-8번지 일원	2,326	2,326	변경 없음
	3BL	8,928	8,928	3-1	유구읍 유구리 425번지 일원	8,928	8,928	변경 없음
	4BL	3,367	3,367	4-1	유구읍 유구리 426-5번지 일원	3,367	3,367	변경 없음
	5BL	5,628	5,962	5-1	유구읍 유구리 588-5번지 일원	5,628	5,962	
	6BL	11,361	11,861	6-1	유구읍 유구리 430번지 일원	11,361	11,861	
	7BL	275	374	7-1	유구읍 유구리 648-1번지 일원	275	374	

주) 각 필지의 분할·교환, 공동개발은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이행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	획지			
2	1BL 2BL 3BL 4BL 5BL 6BL 7BL	-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건축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건폐율	• 6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용적률	• 22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높 이	• 15층 이하	-
			배 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탈피를 유도	-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색 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축선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23건

가) 교통시설 - 21건

(1) 도로 - 21건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622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89. 6. 8	
변경	소로	1	6	10	집산 도로	618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378	소로 2-22	소로 3-41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2	14	8	국지 도로	377	소로 2-22	소로 3-41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19	중로1-3	소로 2-17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47	중로2-1	소로 2-17	보행 및 소방도로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451	소로 2-14	소로 3-41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459	소로 2-14	소로 3-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31	중로1-2	소로2-1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2	4	국지 도로	269	중로1-2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200	소로 3-14	소로 3-17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3	6	국지 도로	200	소로 3-14	소로 3-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00	중로3-3	유구리 423-1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02	소로1-6	유구리 423-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81	중로3-3	소로 3-16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86	소로1-6	소로 3-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230	중로3-3	소로 3-17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33	6~8	국지 도로	238	소로1-6	소로 3-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271	중로1-2	소로 2-39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41	6	국지 도로	271	중로1-2	소로 2-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326	중로1-2	중로1-1	보행 및 소방도로		'77.12.31	
변경	소로	3	42	4	국지 도로	320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56	4	국지 도로	141	중로3-3	중로3-3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57	4	국지 도로	33	중로3-3	소로 3-56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58	4	국지 도로	53	중로3-3	유구리 439-4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기정	소로	3	59	6	국지 도로	257	중로2-4	유구리 구역계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변경	소로	3	59	4	국지 도로	267	중로2-4	유구리 산63-3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60	4	국지 도로	198	소로 3-59	소로 3-59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61	4	국지 도로	51	소로 3-59	소로 3-62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62	4	국지 도로	82	소로 3-59	유구리 476-10 과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63	4	국지 도로	87	소로 3-59	유구리 478 전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64	4	국지 도로	49	소로 3-59	유구리 477-2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폐지	소로	3	65	4	국지 도로	85	소로 3-59	유구리 481 전	보행 및 소방도로		'98.12. 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	소로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 폭원:12m→10m - 연장:622m→618m 감) 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설현황을 고려한 선형변경
소로2-14	소로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 연장:378m→375m 감) 3m ○ 선형 변경 및 사용형태 정정 - 연장:375m→377m 증) 2m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오류에 따른 정정 ○ 이용중인 현황도로, 과도한 시설 폭원개선을 고려한 선형변경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2-15	소로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조서 오류에 따른 연장 정정 - 연장:219m→47m 감) 17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고시 제2016-168호 (2016.11.15.) 조서 오류에 따른 연장 정정 (고시도면 상 연장 축소되는 조서 상 폐지로 금회 조서 정정함)
소로2-39	소로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정정 - 연장:451m→455m 증) 4m ○ 선형 변경 및 사용형태 정정 - 연장:455m→459m 증) 4m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오류에 따른 정정 ○ 이용중인 현황도로, 과도한 시설 폭원개선을 고려한 선형변경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2	소로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6m→4m - 연장:231m→269m 증) 38m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개설되어 이용 중인 도로 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13	소로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16	소로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200m→202m 증) 2m - 기점:중로3-3→소로1-6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17	소로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181m→186m 증) 5m - 기점:중로3-3→소로1-6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33	소로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및 연장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6m→6~8m - 연장:230m→232m 증) 2m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232m→238m 증) 6m - 기점:중로3-3→소로1-6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원 및 연장 오류에 따른 정정 ○중로3-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및 기점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41	소로3-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2	소로3-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6m→4m - 연장:326m→320m 감) 6m ○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설되어 이용 중인 도로 현황을 고려한 선형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141m 	○ 취락지구내 개별주택 진출입을 위해 기개설되어 이용중임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3-5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33m 	○ 취락지구내 개별주택 진출입을 위해 기개설되어 이용중임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3-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53m 	○ 취락지구내 개별주택 진출입을 위해 기개설되어 이용중임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3-59	소로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6m→4m - 연장:257m→267m 증) 10m ○ 종점 및 사용형태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점:유구리 구역계 →유구리 산63-3 - 사용형태:보행 및 소방도로 →일반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설된 문화동교, 도로 현황을 고려한 폭원 및 노선변경 ○ 불명확한 종점 정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사용형태 정정
소로3-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198m 	○ 취락지구내 개별주택 진출입을 위해 기개설되어 이용중임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3-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51m 	
소로3-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82m 	
소로3-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87m 	
소로3-6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49m 	
소로3-6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4m - 연장:85m 	

나) 방재시설 - 2건

(1) 하천 - 2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유구천	지방 하천	유구리 구역계	백룡리 구역계	유구교 유마교	7.7	94~187	999,616	'98.12. 1	
변경	1	유구천	지방 하천	유구리 구역계	백룡리 구역계	유구교 유마교	7.7	94~187	998,938		
기정	2	고현천	지방 하천	녹천리 구역계	유구천	준공업 지역 중로1-2	1.27	-	50,795	'98.12. 1	
변경	2	고현천	지방 하천	녹천리 구역계	유구천	준공업 지역 중로1-2	1.27	26~51	46,245		

※ 유구천은 비도시지역(유구리 구역계~신평면 백룡리구간까지) 포함사항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구천	○ 면적 변경 - 면적: 999,616m ² → 998,938m ² 감) 678m ²	○ 중로3-3호선 변경에 따른 하천 면적 축소
2	고현천	○ 면적 정정 - 면적: 50,795m ² → 44,765m ² 감) 6,030m ² ○ 면적 증가 - 면적: 44,765m ² → 46,245m ² 증) 1,480m ²	○ 면적오류에 따른 정정 ○ 기 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 및 소로3-12호선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다. 반포도시지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10건

가) 교통시설 - 8건

(1) 도로 - 8건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0	보조간선 도로	733	대로3-1	봉곡리 143-4	일반 도로	법무부 치료 감호소	'09. 9. 1	
변경	소로	1	3	10	보조간선 도로	739	중로1-3	봉곡리 143-4	일반 도로	법무부 치료 감호소		
기정	중로	1	9	20	보조간선 도로	165	대로3-1	교통광장 1호	일반 도로	반포 초등 학교	'09. 9. 1	
변경	중로	3	4	12	보조간선 도로	169	중로1-3	교통광장 1호	일반 도로	반포 초등 학교		
기정	중로	3	1	12	보조간선 도로	250	대로3-1	대로3-2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중로	3	1	12	보조간선 도로	263	중로1-3	중로1-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 도로	482	대로3-1	대로3-2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중로	3	3	12	보조간선 도로	490	중로1-3	중로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931	대로3-1	소로1-2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소로	1	1	10	집산도로	931	중로1-3	소로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81	대로3-1	소로2-6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소로	2	5	8	집산도로	89	중로1-3	소로2-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5~ 7.5	국지도로	526	대로3-2	공암리 459-4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15	5~ 7.5	국지도로	364	중로1-4	공암리 459-107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8	5~ 5.5	국지도로	135	공암리 459-74	공암리 459-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7~ 8	국지도로	161	대로3-1	소로3-15	일반 도로		'09. 9. 1	
변경	소로	3	16	7~ 8	국지도로	161	중로1-3	소로3-18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8	소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 도로명:중로1-8→소로1-3 - 폭원:20m→10m - 연장:733m→739m 증) 6m - 기점:대로3-1→중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현황을 고려한 노선폭원 축소, 선형변경 및 대로3-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기점 변경
중로1-9	중로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 도로명:중로1-9→중로3-4 - 폭원:20m→12m - 연장:165m→169m 증) 4m - 기점:대로3-1→중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현황을 고려한 노선폭원 축소, 선형변경 및 대로3-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기점 변경
중로3-1	중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연장 및 가·중점 변경 - 연장:250m→263m 증) 13m - 기점:대로3-1→중로1-3 - 중점:대로3-2→중로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호선, 대로3-2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및 가·중점 변경
중로3-3	중로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연장 및 가·중점 변경 - 연장:482m→490m 증) 8m - 기점:대로3-1→중로1-3 - 중점:대로3-2→중로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호선, 대로3-2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및 가·중점 변경
소로1-1	소로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변경 - 기점:대로3-1→중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2-5	소로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변경 및 기점 변경 - 연장:81m→89m 증) 8m - 기점:대로3-1→중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현황을 고려한 선형변경 및 대로3-1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3-15	소로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축소 및 가·중점 변경 - 연장:526m→364m 감) 162m - 기점:대로3-2→중로1-4 - 중점:공암리459-4 →공암리459-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현황, 개설여건을 고려한 노선 분할 및 대로3-2호선 변경에 따른 가·중점 변경
소로3-15	소로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신설 - 폭원:5~5.5m - 연장:1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3-15호선 노선분할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3-16	소로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점 변경 - 기점:대로3-1→중로1-3 - 중점:소로3-15→소로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호선, 소로3-15호선 변경에 따른 가·중점 변경

나) 공간시설 - 1건

(1) 녹지 - 1건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반포면 봉곡리 273-5번지 일원 (중로1-2호변 양측)	26,690	증) 196	26,886	'09. 2. 2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녹지	○면적 증가 - 면적:26,690m ² →26,886m ² 증) 196m ²	○대로3-1호선 변경에 따른 완충 녹지 증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1건

(1) 학교 - 1건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반포 초등학교	초등학교	반포면 공암리 518-1번지	16,693	증)251	16,944	'09. 9. 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반포 초등학교	○면적 증가 - 면적:16,693m ² →16,944m ² 증) 251m ²	○토지소유 및 학교시설이용현황을 고려한 변경

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1건

가) 교통시설 - 1건

(1) 도로 - 1건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4	20	보조 간선 도로	286	대로 1-6	중로1-43	일반 도로		'90. 1.15	
변경	중로	1	44	20	보조 간선 도로	288	중로 1-1	중로1-43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44	중로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변경 - 연장: 286m → 288m (증) 2m ○ 기점 변경 - 기점: 대로1-6 → 중로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결정된 시설선형(KLIS선) 오류 및 기계설된 도로현황 등을 고려, 선형 변경 ○ 대로1-6호선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계룡면 내흥리 28-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부지 내 「공주 계룡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28-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명 칭 : 공주 계룡산골프장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비고
도시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100,434m ²	○ 계룡산골프장 조성공사 - 골프장 조성 9홀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계룡산골프장 대표 윤예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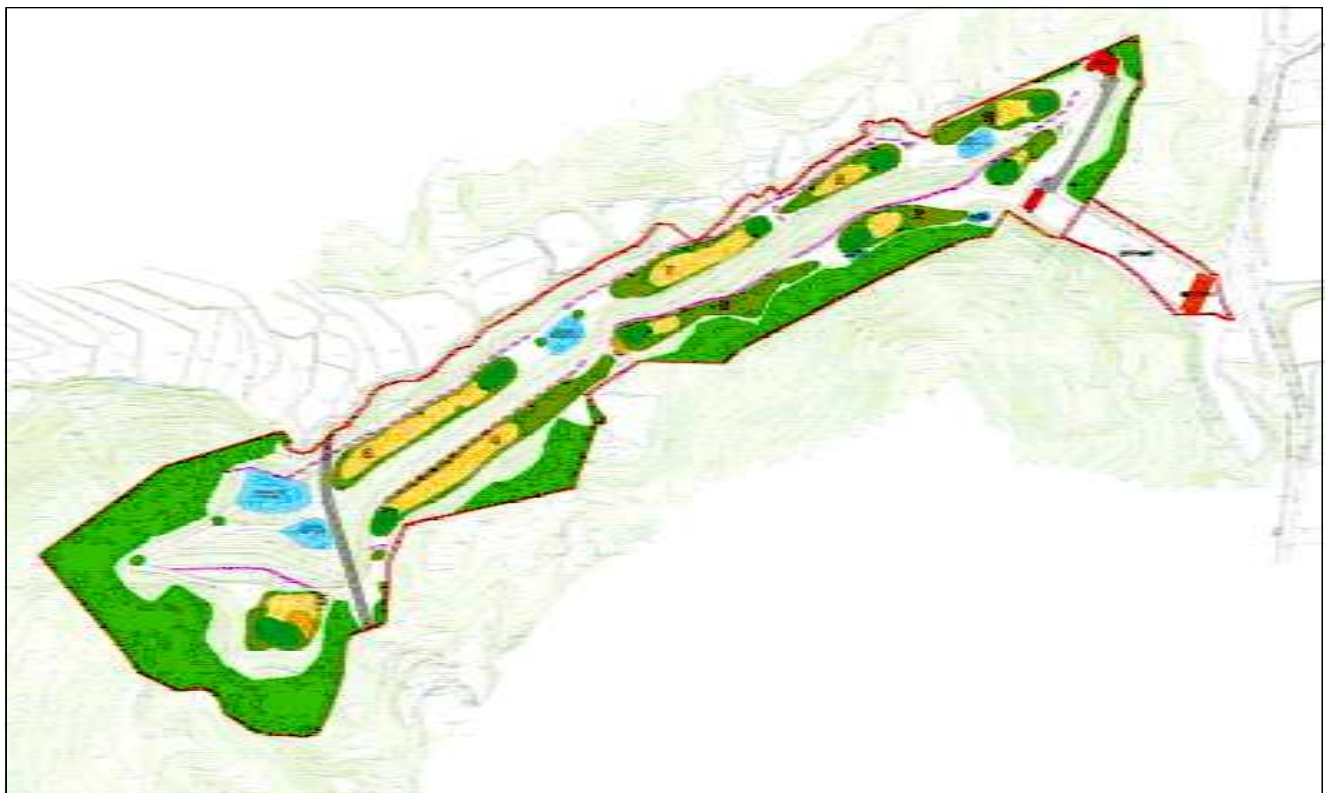
마. 사업기간 : 당초)실시계획인가일 ~ 2017. 7. 31.

변경)실시계획인가일 ~ 2018. 3.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자(변경 없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441	체	182	18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		442	체	350	350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3		443	체	62,591	60,62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4		413	체	72	7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5		515	체	129	129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6		516	체	17,072	17,07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7		513-2	도	76	76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8		513-7	도	32	3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9		514-1	도	70	70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0		515-1	도	242	24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1		515-2	체	39	39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2		513-3	도	47	47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3		513-4	도	9	9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4		513-5	도	10	10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5		835-1	도	56	56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6		835-4	도	30	30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7		산28-1	임	15,156	15,156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8		산28-35	임	179	179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19		산28-36	임	2,297	2,297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0		산28-37	임	64	64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1		산28-38	임	2,110	2,110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2		산28-39	임	232	232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3		산28-40	임	1,243	1,243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24		산28-41	임	115	115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28-1	(주)계룡산골프장	
계		24필지		102,403	100,434			

※ 토지이용계획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00-25 (월송동)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7.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개최
1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619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00-25 (월송동)	2017.07.28	신축	20100202	지역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23-15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로 48-1 (신관동)	2017.07.28	신축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55-2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터전길 17-9 (금흥동)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명칭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 명칭을 추가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19-4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길 37-19 (금흥동)	2017.07.28	신축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284-1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길 140 (월미동)	2017.07.28	신축	20100112	월미동명 관용하는 주소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월미동길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동현동 16-1	충청남도 공주시 광적로 235 (동현동)	2017.07.28	신축	20100112	도로명칭 중복방지(198번 일대)로 반영하고, 198번의 지역번호 부여로 200번을 고시하여 명칭으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13-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길 385-16	2017.07.28	신축	20100112	문금리를 관용하는 주소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문금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동리 39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조정길 7-4	2017.07.28	신축	20121009	옛 길 이름이 조정길이었다는 유래를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790-5, 790-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정일로 247-24	2017.07.28	신축	20100112	내룡리의 별칭 명칭 왕흥교 구왕~중창의 장외고개를 관용하는 도로로, 왕흥정역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15-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부록고개로 261-28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양화를 지나는 도로에 부록이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어 부록고개길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406-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국길 27-3	2017.07.28	신축	20100202	마을에 있는 골짜기가 티하나 없어 신역하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마암리 1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타고개로 140-15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12-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타고개로 140-19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마암리 45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갈현길 28-7	2017.07.28	신축	20100112	창이 많이 나온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11-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단길 10-5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111-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편단길 10-7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4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로길 5	2017.07.28	신축	2010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1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로길 26-34	2017.07.28	신축	2010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45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아래테살길 74-26	2017.07.28	신축	20100112	새로 마을이 생겼던 태살이란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아래테살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3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황새미길 71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인면 인풍리 330-9	충청남도 공주시 정인면 방자들길 85	2017.07.28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신로 730-1	2017.07.28	신축	20100112	신소의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신정리 736-3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황새미길 72	2017.07.28	신축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와룡길 159 외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2017. 07.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33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와룡길 159	2017.07.28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284-1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길 140	2017.07.2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17-2	충청남도 공주시 매산동길 23-4	2017.07.28	건물말소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3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30-1	2017.07.28	신축에 의한 건물말소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7. 28.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와룡길 159-3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는 2017. 07.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공직장부 주소전환 계획	비고
종전주소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34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33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외룡길 159-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외룡길 159-3	2017.07.18	관련지번 조정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79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791-1, 791-2, 791-3, 791-4, 791-5, 791-6, 791-7, 791-8, 791-9, 791-10, 791-11, 791-12, 791-13, 791-14, 791-15, 791-16, 791-17, 791-18, 791-19, 791-20, 791-21, 791-22, 791-23, 791-24, 791-25, 791-26, 791-27, 791-28, 791-29, 791-30, 791-31, 791-32, 791-33, 791-34, 791-35, 791-36, 791-37, 791-38, 791-39, 791-40, 791-41, 791-42, 791-43, 791-44, 791-45, 791-46, 791-47, 791-48, 791-49, 791-50, 791-51, 791-52, 791-53, 791-54, 791-55, 791-56, 791-57, 791-58, 791-59, 791-60, 791-61, 791-62, 791-63, 791-64, 791-65, 791-66, 791-67, 791-68, 791-69, 791-70, 791-71, 791-72, 791-73, 791-74, 791-75, 791-76, 791-77, 791-78, 791-79, 791-80, 791-81, 791-82, 791-83, 791-84, 791-85, 791-86, 791-87, 791-88, 791-89, 791-90, 791-91, 791-92, 791-93, 791-94, 791-95, 791-96, 791-97, 791-98, 791-99, 791-10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2017.07.24	건물번호 합병에 의한 관련지번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7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2017.07.24	건물번호 합병에 의한 관련지번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7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봉곡길 77-13	2017.07.24	건물번호 합병에 의한 관련지번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68-1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68-1, 168-8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37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37	2017.07.26	관련지번 추가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정리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정리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아래태터길 38-1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아래태터길 42-8	2017.07.28	이용도로 변경으로 건물번호 변경	고시후 공문 발송 예정	